
수강신청 부정행위 관련 알림

□ 관련 학칙 및 규정

- 학칙 제107조(징계)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-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(징계사유 및 징계권자)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.
 - 1.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
 - 3.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 - 7. 학내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 - 9. 학칙 등 제규정(각종 규범 포함)을 위반한 자

□ 수강신청 관련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

- 동일 행동 반복 수행 프로그램(통칭 “매크로”)을 사용하여 동일 시간 내에 일반적인 신청 횟수보다 많은 신청 시도를 함으로써 정상 이용자의 기회 박탈
→ 2017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학생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 처리
→ 2018학년도 2학기 00명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, 장학선발 취소 등(차회 적발시 징계)
- 다른 학생의 신청내역을 열람하거나, 신청 교과목을 탈취할 수 있는 부적정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공정성을 침해
→ 2016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학생 적발 및 유기정학 처리
-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합의하여 본인이 가진 수강신청 교과목을 양도하고 금품 등의 대가 수령
→ 2015학년도 2학기, ○○대학 소속학생 적발 및 엄중 경고(차회 적발시 징계)